#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064

발의연월일: 2024. 8. 22.

발 의 자:조승환·이종배·김성원

이성권 • 서일준 • 권영세

곽규택 · 정희용 · 안철수

김승수 · 이달희 · 임이자

김도읍 의원(13인)

### 제안이유

현재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적응이 곤란한 청년에 대해서도 사회에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위기청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가족돌봄서

비스 지원, 상담·교육 지원, 취업·자립 지원 등 위기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위기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위기청년"을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으로 정의하고, "가족돌봄청년"을 고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과 거주하며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청년으로서 본인 및 돌봄대상가족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으로, "고립·은 둔청년"을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스스로 회피하거나 제한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활동이 곤란한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 협의하여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위기청년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위기청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하여 가족돌봄에 필요한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청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기청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위기청년"이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말한다.
- 2.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 3. "돌봄대상가족"이란 고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을 말한다.
- 4. "가족돌봄청년"이란 돌봄대상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청년으로서 본 인 및 돌봄대상가족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5. "고립·은둔청년"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스스로 회피하거나 제한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활동이 곤란한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② 가족돌봄청년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이행한 경우에는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까지를 가족돌봄청년으로 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 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위기청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청년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위기청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 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위기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위기청년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 제5조(위기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위기청년 지 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위기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위기청년 조기 발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 3. 위기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4.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 의 지원체계 구축·운영
- 5.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
- 6.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7.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 8. 그 밖에 위기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청년기본법」 제8조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기청년정책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위기청 년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청년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위기청년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8조(위기청년정책심의위원회) ①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위기청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위기청년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3.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 평가에 관한 사항
  - 4.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5.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1.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 2. 위촉직 위원: 위기청년 지원 관련 단체의 장이나 위기청년 지원 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가족돌봄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하

- 여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대상·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가족돌봄서비스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청년 이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기준·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상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대상·기준,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이 생계와 가족 돌봄, 고립·은둔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지원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 3. 직업소개 및 관리
- 4. 그 밖에 위기청년의 직업체험 등에 필요한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의 대상·기준,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건강관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이 건강하 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자립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위기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제16조(주거시설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청년과 돌봄대상가족이 거주할 주거시설 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위기청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기청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위기청년 지원
  - 2. 위기청년 조기 발굴 및 지역사회 지원과의 연계 · 협력
  - 3. 위기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4. 위기청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 5. 위기청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 6. 위기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7. 그 밖에 위기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관련 비영리법 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종사자의 자격,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위기청년 복지 전담공무원) ① 위기청년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위기청년 복지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 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전담공무원은 위기청년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등 지역 단위에서 위기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⑤ 관계 행정기관, 위기청년 복지단체(위기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9조(위기청년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위기청년에 대한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0조(비밀유지 의무) 위기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협력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청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 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 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3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위기 청년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4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위기청년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